

다단계판매업 등록증

1. 등록번호
2. 상호
3. 소재지
4. 대표자의 성명
5. 대표자의 생년월일(남·여)
6. 전자우편주소

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공정거래위원회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변경사항 및 처분사항 등		
연월일	변경 및 처분 내용	담당자(서명 또는 인)